

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2012 ~ 3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2. 5. 17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○ 군내 출신이거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군내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고향 거창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고취하고, 군내 제조업체 등의 청년층 취업을 장려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지원범위 및 시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장려금 수혜자 군정 홍보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3호타목
 - 중소기업 육성

나. 예산조치 : 2012년 예산확보(10,000천원)

- 기타보상금 (301-12)

다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(2) 입법예고(2012. 4. 24. ~ 5. 14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내 제조업체 등의 취업을 장려하고, 고향사랑 마음을 고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의 기준) 애향장려금(이하 “장려금”이라 한다)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1.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내 출신(출생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군내인 사람) 이거나 군내 학교를 졸업한 사람
2.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 제조업체 등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

제3조(지원대상자 추천 등) ① 제조업체 등에서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천서(별지 제1호서식)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2. 졸업증명서
3.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
4.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
5. 지방세납세증명서

② 제1항제1호·제5호는 공부(公簿)의 확인으로 갈음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자 심사)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 심사 순위는 장기근무경력자, 소득이 낮은 사람(최근 6개월간 받은 급여액과 재산세납부액) 순으로 한다.

② 군수는 각 제조업체 등에서 추천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확인과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.

제5조(지원 범위 및 시기) 장려금은 한 사람당 한번만 500천원을 지급하되,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환수조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.

1.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

2.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자명부의 비고란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홍보요원 위촉) ①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군정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

② 홍보요원은 애향심으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애향장려금지원대상자추천서

성명		성별	남·여	생년월일	
현재 주소					
등록기준지 (출생시 주소)					
근무업체명					
취업년월일 (근무기간)		근무부서			
졸업학교		졸업년월일			
추천사유					

위 사람은 이 업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「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○ 업체대표

인

거창군수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자 명부

번호	수혜대상자				취업현황				지급내역		비고
	성명	성별	생년월일	주소 (등록기준지)	업체명	소재지	취업 년월일	근무 부서	지급일	금액	

※ 가로서식 A4 규격

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제5조(지원범위 및 시기)

장려금은 한 사람당 한번만 500천원을 지급하되,
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
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10,000천원 이하이므로
비용추계 제외 대상임

4. 작성자

경제과장 이 재 영